

제395회 국회  
(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6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2년4월26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 상정된 안건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 1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 1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 1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 1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 1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 1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 2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 2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 2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 2

(14시01분 개의)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832)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224)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42)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데요, 오늘 먼저 유상범 간사님께서 어제 논의했던 내용 중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안으로 만들어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한 장짜리 이것 다 배포가 돼 있습니까?

○**이수진 위원** 예.

○**소위원장 박주민**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예.

○**소위원장 박주민** 유상범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예.

4항의 원래 뜻은 아마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합의문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이 되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별건 수사 금지가 아니라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변경의 기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기소된 사건에서 단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데 있어서의 공소장 변경, 즉 범행 일자에 오기가 있거나 장소가 잘못됐다거나 하는 경우의 얘기고 이 동일성의 기준은 포괄일죄, 영업범이거나 상습범일 때 일부만 기소됐는데 나중에 추가가 범죄가 더 확인됐을 때 그 부분을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단일한 범위로 이루어진 반복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

분을 이렇게 규정한 것은 잘못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시했지만 경찰에 사건이 송치됐을 때,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1명이나 2명인 줄 알았는데 수사를 더 진행해 보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경합범이거든. 그러면 이것 수사를 아예 못 해요,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다음에 진범이 발견됐어요. 진범이 발견되면 그 진범조차 수사를 못 하는 겁니다. 위조와 사문서로 죄가 송치됐는데 사기행위가 발견이 됐어요. 이것은 그 행위가 다 경합범으로, 별개의 범죄거든. 그러면 여기서 규정한 대로 하면 그런 수사를 아예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에서, 합의를 하신 분들이 별건 수사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시정조치요구 사건 또는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한 사건, 이 자체는 경찰에서 검찰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과 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규율할 이유도 없고요.

이런 면에서 결국 이 별건 수사 금지는, 수사준칙과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보면 별건 수사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습니다. 그 정의한 내용이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이 법문에 넣고.

그다음에 이 별건 수사 금지는 검찰·공수처·경찰 누구에게나 공히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으로 규율을 함으로써 별건 수사 금지의 원칙을 별도로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될 수 있게 이렇게 법안을 성안하는 게 맞다 이게 제 판단이라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것을 보시고.

행정처 차장님 어떠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합의문에 보니까 별건 수사 금지라고 괄호에 있네요. 그래서 별건 수사 금지의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198조의2 그 내용은 저도 금방 처음 봤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차관님 어떠세요? 아니면 검찰국장이 대신 대답하게 할까요?

검찰국장.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예, 말씀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이것 봤어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별건 수사 금지가 전단은 검찰 수사준칙에 나온 규정이고 후단은 인권보호규칙에 나온 규정이에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전단의 내용은 뭐냐 하면 사기범죄로 조사를 받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뭔가 처벌을 꼭 해야겠다고 해서 없던 절도 사건을 막 찾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데 이 사람 자백을 받으려고 하니까 한 5년 전, 6년 전의 다른 사건에 있었던 무슨 통화 내역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을 협박해 가지고 또는 자백을 강요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별건 수사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을 형사소송법 안으로 옮겨온 겁니다.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점에 대해서 따로 이견이 있나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사에 있어 가지고 모든 새로운 혐의에 대한 수사는 논리적으로는 전부 별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합의문 취지는 특정인이나 특정 혐의를 기소하기 위해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소위 말하는 잘못된, 위법한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8조의2, 조문 위치에 대해서야 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형소법에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차장님 어떠세요, 경찰청 차장님?

○**경찰청차장 진교훈** 저희도 지금 조정의견의 6페이지에 있는 196조에 4항 같은 경우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건 수사의 금지 조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안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합의문 제4항의, 6페이지에 있는 조정의견 중에 196조 2항을 그러면 놔둘 것인지 여부는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저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이수진 위원** 우리가 원래 당론으로 채택된 걸 포기를 하고 의장님이 중재안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양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것을 가지고 법조문을 만들었고, 그 법조문에 대해서 그게 이 합의문과 다른지, 안 다른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고. 송치 사건에 대해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합의문에다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합의안에 반대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합의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박병석 의장님이 이 합의안에서 한 치라도 벗어나면 자기가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쓸데없는 논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문 가지고 위헌이니 어쩌니 그런 말씀들 이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우리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양보했어요, 지금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제발 이 합의문대로 법조문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합의문에 있는 내용이 별건 수사 금지예요.

○**이수진 위원** 그것은 나중에 가서 해결하자고요. 지금 이것 가지고 합의문 내용이 어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조문을 해결하자고요, 법조문을.

○**유상범 위원** 이수진 위원님, 그래서 이 합의문을 가지고 법조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수진 위원** 지금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 왔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누가 만들……. 어제는 안 만들었는데 오늘은 만들었어요?

○**이수진 위원**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만들어 오셨다는 안도 배포를 해 주세요.

○**전주혜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이게 이수진 위원이 만든 안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위원들이 만든 안이에요?

○**이수진 위원** 민주당에서 만들었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이수진 위원도 일부 만들었고 민주당 위원들도 같이 검토한 안입니다.

○**김남국 위원** 배포되는 동안에 말씀을 좀 드리

면, 저희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중재안을 가지고 지금 조문 성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 유상범 위원님께서 끌아 주신 이 개정안을 보면 지금 이미 이렇게 제안된 4조 1항에……

○소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이렇게 해 볼게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유상범 위원님이 주신 이 한 장짜리 먼저 보면 검찰청법 4조 1의 나목 같은 경우 어제 저희가 ‘경찰공무원’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특사경이나 이런 사람들도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넣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그런데 여기에 파견받은 사람들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다들 동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 있는 위원님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맞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시면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형사소송법 198조의 2에 별건 수사 관련된 문구를 가져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준칙에 있는 내용을 올리신 건데 지금 이수진 위원님이, 그다음에 김남국 위원님이 배포한 자료를 봐도 이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이수진 위원 동의합니다.

○김남국 위원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게요……

○소위원장 박주민 이상해요?

○김남국 위원 예, 그러니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은 되는 것처럼 약간 해석될 우려가 있어서 ‘만’을 삭제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주민 어떠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만’을 지금 삭제하면……

○김남국 위원 약간 오독의 여지가 있어서요.

○소위원장 박주민 문구 자체가 포함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수진 위원 아니, ‘목적만으로’가 맞아요.

○유상범 위원 ‘목적만으로’가 맞지요. 왜냐하면 이 규정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뇌물로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뇌물 사건이 입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다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물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을 가지고 수사해서 이 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우리가 이를테면 도박을 했든지 또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김남국 위원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이 지금 이 문장 표현으로 정확하게 담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유상범 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허위 공문서 행사를 해서 사건이 왔는데 사기가 발견됐어. 그러면 사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무슨 피해자가 많은 성매매 사건이 왔어. 그러면 다른 성매매 사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를 ‘만’을 안 넣으면 마치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범사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진범은 밝혔어.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안 해 놓으면 범죄 혐의를 밝힐 목적으로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이상하게 해석이 되니까 이럴 때는 그 수사가 입증이 안 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피로해서 별건으로 수사하는 걸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수진 위원 예, 이것은 유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남국 위원 아니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게 ‘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더 이상해지는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수진 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게 어떠신가요?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한 그 의미는 아시지요? 조문을 만들 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지금 여기 ‘목적만

으로'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만'을 빼면 더 이상 할 것 같고요.

○김남국 위원 그래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있는 게 더 의미가 명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남국 위원 왜요?

○이수진 위원 이게 맞습니다.

○김남국 위원 맞습니다가 아니고 설명……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지요.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위원 차관님!

○법무부차관 강성국 어차피 별건 수사 금지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지금 그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는 표현돼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법무부차관 강성국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취지는 같으시니까 표현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만'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만'이 빠져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거기는 수사의 부당한 연장, 개시 이런 얘기이고 별건 수사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김남국 위원 '만'으로 가는 게 오히려 완전히 의미가 이상한데……

○전주혜 위원 '만으로'가 맞지요.

○이수진 위원 '만으로' 넣어야 돼요.

○유상범 위원 설득을 당하면 그렇게 바뀌는 게 맞아요. 사정 변경이 생기면 정리를 해야지.

○소위원장 박주민 자, 일단은 '만으로'를 넣는……

○김남국 위원 잠깐, 지금 차장님……

○소위원장 박주민 누구에게 더 여쭙보실 거예요?

○김남국 위원 지금 답변하시려고……

○경찰청차장 진교훈 저 말씀하시는……

○김남국 위원 아니요,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유상범 위원 검찰국장, 이것 내용 잘 알지요?

검찰국장이 답을 해 보세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말씀처럼 '만으로'를 넣는 게 의미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너무 답이 짧으니까 또 이해가 잘 안 되네, 다른 사람들이.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지금 말씀은 아까 예를 드셨던 거랑 같은데요. 결국 A라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관련 사건들을 수사할 때 그 수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만' 자가 빠져 버리게 되면 그 수사 자체가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해석처럼 될 수가 있어서 '만'을 넣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이것은 전체 사건에 대한 얘기이고—그다음에 후단에 보시면 시정조치요구 사건 또 고소인이 이의 제기를 한 사건, 이것은 결국은 똑같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에요. 다양한 송치 방법 중의 하나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의 일반 규정만 우리가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이건 다 규율이 되는 겁니다.

신뢰를 잘 안 하니깐 이것도…… 차관님!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유상범 위원 판생각 하셨어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아닙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행정처 차장님, 제 설명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저도 이 위당을 처음 봐서 한참 생각했는데 결론은 '만으로'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서 그 범죄 혐의를 내가 밝히려는 목적은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 목적은 당연히 있는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단서 아무것도 없는데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게 별건 수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으로'가 들어가면 그 사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목적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자료가 있거든. 예를 들어 아까 성매매 말씀하셨는데 성매매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수사 목적 플러스 다른 자료가 있으니까 다른 사건 수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한번 내가 찢러 볼

거야라고 수사기관이 그냥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으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김남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해석이 이 의미로 쓰였다라는 건 충분히 아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문언 해석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이 말 그대로 또 하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라는 것을 그 한 덩어리로 해석해 버리면 그러면 다른 어떤 이외의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별건 수사를 정당화하는 해석의 의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이 빠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목적이라는 게 아주 애매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다든지 증거가 있다든지,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만 목적이라는 법률적 단어가 법문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검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근거, 단서, 이 법률적 용어를 써야지 이것은 ‘목적만으로’ 하면 ‘그 목적만 있는 것 아니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 법문상으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김남국 위원**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다른 목적이 있어 가지고 같이 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별건 수사를 또 열어 주는 게 돼 버리는……

○**김영배 위원** 검찰국장님, 그러니까 목적 말고 이런 경우에 쓰는 검찰청 내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마라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검찰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김영배 위원** 검찰에서 목적만 따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그렇기는 한데 결국 저희가 위법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건의 범죄 혐의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관련 없는 사건을 수

사하는 것을 지금 계속 금지하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목적만으로’라는 것들을 계속 사용해 와서 저희들은 이 해석이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진행된 게 좀 애매한 선상에 있어 가지고, 검찰에서 뭘 할 때 제대로 금지 못 해 온 게 그 애매하게 표현해 놔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반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단일성과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봤기 때문에 단일성과 동일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적만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목적이라는 것을 누가 구분하는 거예요, 도대체?

○**유상범 위원** 김영배 위원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별건 수사 금지’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 금지를 위해서 이 규정을 적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약간 착오가 있었어요. 이 전문가가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이 별건 수사 금지라고 판단에 약간 착오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실제로는 이게 공소장 변경 기준인데, 별건 수사 금지와 공소장 변경 기준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별건 수사 금지에 관해서 규정 2개를 다 해 놔고 그것을 우리가 입법하면 김남국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벗어나면 어떡하냐, 그런데 취지는 이거예요. A 사건의 증거가 없다, 아예 없는데 다른 사건을 가지고 이 선수를 구속하거나 또는 괴롭히거나 이런 것을 막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명확하지요. 그런데 만일 A 사건에서 증거가 있는데,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계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그 문서를 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받은 게 나와, 그러면 그것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별건이 아닌 거지, 관련 사건 사고.

이것처럼 그런 자료가 없는데,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부분은 있는데 증거가 안 돼.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어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탐문해 가지고 애가 사기 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괴롭힐 때 이게 별건이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제가 한 가지……

○**김남국 위원** 차장님 말씀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니까 ‘목적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 놓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가 다 표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김남국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해요.

○**김남국 위원** 검찰국장님, 이 정도 표현이면 무리 없이 별건 수사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한할 수 있겠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구를 받아들이되 ‘목적만으로’ 뒤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라는 단어와 문장을 좀 추가해서……

○**이수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아까 말씀하셨듯이 A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B 사건의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게 별건 수사 금지인데……

유상범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맞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들어갔던 부분이 범죄 수사를 A 사건을 하다가, 지금 196조와 197조에 검사와 사경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권이 있는데 그 자체를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못 하게 하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건 수사 금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시하신 건 맞고요.

먼저 좀 미미한 부분이지만 198조의2는 체포·구속장소감찰로 이미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위치는 198조의……

○**유상범 위원** 198조의 주의의무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지……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준수사항 중 4항으로 들어가는 게……

○**유상범 위원** 4항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예.

○**김남국 위원** 4항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이미 현행 규정이 있습

니다, 198조의2가.

○**소위원장 박주민**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소위원장 박주민** 예.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A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B 사건을 하는데 목적이 ‘만으로’가 된다면 A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A 사건의 혐의를 밝히는 목적이 일정 부분 있고 B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그 자체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일정 부분 있는 경우에도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유상범 위원** 그게 후단에 있잖아요. 그게 후단이라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지 마라.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그리고 그 합리적인 근거라는 게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반대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게 저희가 전달 받기로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던 문제로……

○**김남국 위원** 어떻게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만으로’…… 원래 준칙에도, 여기 참고자료……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이 성안을 해 주신 건 좋은데 합의안에 따른 성안을 한 걸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맞아요.

○**김남국 위원** 잠깐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의 문제 지적을 수석전문위원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사준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입니다—제16조에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거기도 ‘만’이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예, 그래서 이게 100% 이 사유가 있어야만 별건 수사가 금지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가 있어서……

○김남국 위원 제 취지가 이런 취지거든요.  
차장님, 어떤가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수사준칙에는 ‘만’이 없다고 하는데요……

○김남국 위원 ‘만’이 빠지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문리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유상범 위원 잠깐만, 검찰국장이나 기조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고 ‘만’이 빠져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리합시다.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저희는 ‘만’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지 앞으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만’이라는 말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의심을 받는, 별건 수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의심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안 자체는 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 그런 사안의 경우에도 ‘만’이라는 말이 없으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만’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주민 예,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일단 별건 수사 금지 개념과 단일성·동일성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논의했을 테니까 제가 거기에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일성·동일성 금지라면 뒤에 괄호 치고 별건 수사라고 안…… 썼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건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고.

그러면 별건 수사의 개념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문구를 지금 넣어야 됩니다. 그게 ‘만으로’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까 행정처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만’을 빼더라도 뒤에 ‘합리적 근거 없이’를 같이 넣으면 그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남국 위원 박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만’을 빼고 ‘합리적 근거 없이’ 그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김남국 위원은 ‘만’ 자를 빼는 게 지상 과제구먼요.

○김남국 위원 아니, 박형수 위원님과 제가……

○소위원장 박주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만’이라는 게 수사준칙에도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박형수 위원님도 ‘만’ 빼도 상관없고 ‘합리적 근거 없이’라는 말을 넣는 것으로도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남국 위원 그러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리고 우리 소위 과정에서 별건 수사 금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수진 위원 그리고 근거를 관련성으로 바꾸면 어때요,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근거보다는 관련성이 더 명확하지 않아요? 근거는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저는 처음에 이것을 ‘합리적인 단서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다가……

○전주혜 위원 ‘합리적 이유 없이’가 더 낫겠는데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무슨 일종의 자료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 자료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근거라는 말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적절한 표현으로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합리적 이유 없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유라는 것은 주관적 성향이 강한데 근거라는 것은 객관성을 좀 가져야 된다, 합리적 객관성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근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김영배 위원 근거가 나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주민 근거가 약간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데요?

○김영배 위원 근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합리적인 근거 없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박주민 세 가지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외의 사안들은 쟁점이 있었거나 쟁점이 있을 것으로……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합의문 4항의 196조 2항으로 한 부분 그다음에 초안에 나왔던 4항 그다음에…… 검찰청법만 되어 있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어떤 걸 삭제해야 된다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우리 중재안 초안 6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별건 수사 금지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으로 넘겼잖아요, 규정을 했고. 지금 초안의 196조 2항에 보면 이렇게 해서 동일한 범죄사실 기준으로 수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4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정한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지요.

○김남국 위원 그것을 삭제하는 것은 중재안의 내용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내용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아니, 중재안의 내용이 별건 수사 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남국 위원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것 같은……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김남국·이수진 위원님이 주로 작업하신 이 안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합의문 4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예 같이 듣고 정리하시면서 다른 사안들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설명해 주실래요?

○전주혜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전주혜 위원 민주당에서 제출한 걸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이것은 합의안을 넘어서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다 하실 의향이신지 한번 좀 여쭙……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제 하나하나 해야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말씀하세요.

○이수진 위원 어느 부분의…… 검찰청법 4조부터 할까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그러면……

○전주혜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합의문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민주당이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합의 파기입니다.

○이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혜 위원 합의 파기고, 아까 앞서서 여기에 있는 것만 하자면서요. 이 합의문에 있는 것만……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조문……

○전주혜 위원 잠깐만요, 제 발언 중이니까요.

이 합의문에 있는 것만 하자고 분명히 얘기를 앞서도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4조 1항 1호 가목 중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삭제하는 것 말고 어떤 걸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외의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합의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합의의 내용 안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의장님이 중재하시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보면 각 당이 자신의 문구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갖고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했고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이 갖고 오신 문구에 대해서는 양당의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갖고 온 문구를 당연히 심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심사하실 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 먼저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이수진 위원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남국 위원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김남국 위원 제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수진 위원 제가 검찰청법 하고 형사소송법 하시겠습니까.

○김남국 위원 예, 그러세요.

○이수진 위원 4조(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주민 죄송합니다. 설명하실 때 이게 합의사항의 어디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2항에서 다 빼고 나머지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를 남겨 놓는 거고, 그다음에 앞에는 다 삭제했습니다. 대신 ‘개시할 수 있는’을 ‘개시하거나’ 또 직접수사를 해야 되니까 ‘직접할 수 있는’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해 버리면 경제범죄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또 다른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등’을 ‘중’으로 바꿨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걸 새로운 법안이고요.

○이수진 위원 이것이 합의문 2항에 맞는 내용이고요.

나목의 ‘경찰공무원……’ 이것은 그대로 뒀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경찰공무원 중에 특사경하고 고위공직자 공무원 중에 파견 공무원을 포함하는 식으로 바꾸기로 해서……

○이수진 위원 특사경.

○소위원장 박주민 예, 나목은 그렇게 수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다음에 다목에 가서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것은 합의문의 4항에 있습니다. 4항에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검찰 시정조치 이런 것도 다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여기서는 일단 뺐습니다. 일단 빼고,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가서 단일성·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하는 걸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목에 가서 ‘사경이 송치한 범죄’는 빼고 이와 관련된 것은 인지를 하는데 그 인지함에 있어서도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라목에 가서는 시정조치나 고소·고발이나 체포·구속된 데서 송치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의 제기 여부 결정을 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지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련성이 뭐냐? 그래서 2항에다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가·나목의 범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호의 범죄를 말한다’ 이래서 이게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그 내용을 법률로 지금 승격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죽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항에 4조 1항 라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번 다시 강조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다가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범죄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이래서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조에 가서는 직제, 뭐 특수부 몇 개 만들고 이것은 법률에서 뺐고 대신 그렇게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한다’ 이 조항만 넣는 걸로 해서 일단 검찰청법은 합의안에 맞게 이렇게 고쳤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주민 예.

○유상범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분명히 어제 와서 한 얘기는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정의견을 기초로 논의를 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도 여기에 설명한 합의문 1, 2, 3, 4항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은 내용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합의문에도 없는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합의문에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수진 위원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끌고 와서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 범위를 합의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각 항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1호에 ‘개시하거나 직접 할 수 있는’, 이거 우리가 합의문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하라고?

○이수진 위원 아니, 이것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건 조금 더 넓혀 준 거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합의 문구를 가지고……

○이수진 위원 ‘직접 할 수 있는’을 빼기를 바라십니까?

○유상범 위원 지금 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수진 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당연히 빼야지요. 이거 손을 대지를 말아야지요. 그것은 합의문에서……

○이수진 위원 아니, 이것은……

○유상범 위원 4항에서 언급된 것은……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아예 검수완박법으로 그냥 하시고요. 여기 지금……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도 끝낼 수가 없으니……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파투 내겠다는 거예요?

○이수진 위원 이렇게 할 수 없으니 표결로 해주셔야 되고 형사소송법도 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이수진 위원이 이렇게 앞장서서 파투 내는 걸 못 봤어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직접 할 수 있는’이 되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전주혜 위원 그럼요.

○유상범 위원 문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혜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합의문의 내용에 따라……

○김영배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주혜 위원 합의문에 있는 내용 안에서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박형수 위원 합의문에……

○전주혜 위원 합의문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박형수 위원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이야기하는 거 아니예요?

○유상범 위원 이렇게 하려고?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전주혜 위원 아니, 김영배 위원님,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요.

○김남국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전주혜 위원 우기지 마세요. 어제 소위에 들어오시지도 않았잖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지금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들으시고.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한데 법률가도 아니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서 부패하고 경제 문제를 남기고 4개를 일단은 제외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시하거나, 수사 개시도 있지만 이게 수사를 바로 직접 수사하는, 이제 결합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왜 문제가 되지요?

○박형수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전주혜 위원 그것은 이 합의문에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도 안 얻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발언권 안 줍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말씀하시지요.

○김영배 위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전주혜 위원 아니, 그러실 거면 그냥 합의 포기하세요.

○박형수 위원 범죄 수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이고, 여기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금 ‘개시하거나 직접수사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검사의 직무 중에서 현재 되어 있는 게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것을 따로 나눠서 표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검사의 직무 중에서 보충수사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종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것, 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게 6대 범죄 또는 지금 줄이는 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법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개시하거나 직접 할 수 있는’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법문의 취지에 따르면 ‘직접 개시’가 맞는데 이 법문에는 기존에 있는 게 ‘개시할 수 있는’을 그렇게 이해를 해 왔어요. 해석을 다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되고 그냥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수진 위원 이걸 송기헌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신 건데요.

○박형수 위원 합의문의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그게.

○이수진 위원 아니, 송기헌 위원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박형수 위원 아니, 그것은……

○전주혜 위원 아휴, 무슨 송기헌 위원님이 뭐 어디 여기 지금 대표로 참여하시는 겁니까?

○박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법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수진 위원 아니, 검사 출신 위원님이 이런

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김남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국 위원 제가 여기 형사소송법 수정안을 이렇게 합의문에 맞춰 가지고 조문을 성안을 해 왔는데요. 이게 없는 내용을 가져온 게 아니고 합의문 4항에 있는 내용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이 별건 수사 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검찰에서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사건을 포함해서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아마 형사소송법 245조의7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포함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지금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196조의 2항에 담아 왔고요.

그다음에 앞서 유상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별건 수사 금지를 유상범 위원님께서 형사소송법 198조의2에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이것을 198조(준수사항)에다가 넣어 가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만’을 빼고 ‘합리적 근거 없이’를 넣어서 198조(준수사항) 4항에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관련되어서는 이의신청에서 지금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의신청과 관련되어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법무부차관님, 지금 1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이 부분에서…… 2페이지입니다.

○법무부차관 강성국 245조의7 말씀하시는……

○김남국 위원 예, 245조의7. 여기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이것도 지금 고발사건이 워낙 많아서…… 지금 고소, 고발, 피해자 다 아마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한을 하자는 취지라면 지금 이의신청권이 보장돼 있는 세 측면, 고소인, 피해자는 당연히 이의신청권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고요. 고발인에 대해서까지 이의신청권을 줄지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의 안은 지금 고소인만 이

의신청권을 두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부도 조금, 피해자에도……

○김남국 위원 피해자에게까지 지금 늘리는 방향으로 했고 고발인을 제외하도록 했거든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김남국 위원 그래서 피해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확대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디든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고발인을 제외했을 때에는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인 고발 사건에 있어서의 이의신청이 조금 이렇게 누락되고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법무부차관 강성국 구체적인 통계는 검찰국장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 예, 검찰국장님이나 대검 부장님 중에 누가 어떻게 답변을…… 고발인 빠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좀……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고발인의 권리이고 현재의 제도상으로도 고발인의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시민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현재도 형사소송법상 고발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보장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고발인의 권리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합의문 내에서도 이 고발인이라는 것을 빼 것이 고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소인이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굳이 이 상황에서 고발인의 권리를 박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위원 예, 저도 대검 부장님의 말씀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의 조정의견은 ‘고소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람’으로 바꿔서 피해자를 포함한 고발인까지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소위원장 박주민 고발인을 포함시킨다?

○김남국 위원 예, 고발인을 포함시키는 게 저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니다.

○김남국 위원 실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들도 있

을 수 있지만 환경소송이나 이런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소송에서는 사실은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건에 있어서 고발인의 정당한 이익신청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고발인을 포함하는 게, 부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지금 갑자기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다가 질문하셨다가……

○김남국 위원 원래 타당한 의견에는 또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박주민 나머지 부분은 더 설명하실 게 없으십니까?

○김남국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칙조항은.

○전주혜 위원 아니, 이것은…… 잠시만요.

○소위원장 박주민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아니, 이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는…… 물론 저도 지금 김남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면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중구난방이 되어서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갑자기 발언하시겠다고 그러더니 형사소송법을 다 설명해서 가지고……

○박형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제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합의문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 놓은 그 순서에 따라서 논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논의가 정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소위원장 박주민 박 위원님, 제가 오늘 모두에……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말씀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그 과정에서 민주당 안이 있으면 ‘우리 안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안을 중심에다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돼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고소인, 고발인도 지금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각 당의 의견을 거기다가 녹여서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아까 제가 모두에 오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까지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주신 조정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는데 오늘 유상범 위원님도 문구를 정리해서 갖고 오셨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문구를 갖고 오셨다고 해서 먼저 유상범 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문구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낸 문구를 심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 이미 드렸고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유상범 위원님이 주셨던 문구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고 일부 수정해서 다 받아들였고요. 지금은 민주당에서 갖고 온 문구를 배포, 이수진 위원님이 갖고 온……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그건 아니지요. 여기 보세요.

○박형수 위원 그렇게 논의를 하면 이걸 논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논의할 수 없게 된 다니까, 그렇게 되면.

○전주혜 위원 아니, 이걸 보세요.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전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주당, 그러니까 이수진 위원님이 갖고 오신 이 안건, 이 문구가 국회의장의 중재 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 의견을 주시면 돼요, 심사를 하면서.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 지금…… 아니예요.

○김영배 위원 아까 모두에 사회 보시면서 오늘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이수진 위원님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김남국 위원님이 아까 우리 민주당에서 준비한 안을 설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약간의, 한두 군데 더 손을 보자든지 혹은 아니면 이게 완전히 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 주장을 듣고 그게 타당한지를 봐서 타당하지 않으면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더 길게 하나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논의할 게 아니고 의견을 빨리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

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의견을 좀 빨리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검찰청법부터, 두 분이 안에 대한 설명이 됐으니까 이제 검찰청법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내놓고 이것을 빨리빨리 한꺼번에 정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김영배 위원 아니, 복잡하지 않잖아요. 간단한데 뭐.

○전주혜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수진 위원 뭐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박형수 위원 복잡하지 않다고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데요.

○김영배 위원 아니, 4개를 빼고 2개를 집어넣었으니까.

○박형수 위원 그것은 첫 번째 항이고 뒤를 보십시오. 뒤에 이게……

○전주혜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김영배 위원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이수진 위원 그게 원래 대통령령에 다 있었던 겁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이게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 지금 법에 있는 건데, 뭐.

○전주혜 위원 일단 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말씀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어제 국민의힘에서 성안해서 제출한 것은 조문을 2개 고친 겁니다. 2개 고친 것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은 합의문에 충실한 조문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수석전문위원께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작성하신 것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이것은 민주당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걸.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제 발언 중이니까요.

아니, 어디에 지금 여기 이게 합의문하고 맞다고 이것을 논의하자고 하시는 건지……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합의문하고 안 맞는지.

○김영배 위원 어떤 내용인지……

○김남국 위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셔야지……

○전주혜 위원 근거를 얘기할게요.

근거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찰청법 4조에서는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삭제’ 이렇게만 돼 있어요, 합의문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하신 것에도 그것 삭제한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조가 수정이 돼서 어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제출한 걸 보면 모든 걸 다 고쳤습니다. ‘개시할 수 있는’을 ‘개시하거나 직접 할 수’ 그리고 또 가목도 고쳤지요. 부패범죄, 경제범죄에다가 다른 것까지 고쳤고요. 그다음에 라호는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한번 보세요. 합의문에서 어디에 198조의2가 있고 어디에 245조의5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걸 창설해 오신 거예요, 창조적으로.

○이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전주혜 위원 또 하나 볼게요.

그다음에 2항 보십시오. 2항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어느 합의안에서 누구한테 이것을 규정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지금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온 거예요. ‘형사소송법 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129조부터 133조까지’,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이게 합의문에 따른 수정이라서 이것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문 파기입니다. 민주당의 합의문 파기예요.

○김영배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수진 위원 아니, 제가 먼저 손 들었어요.

○전주혜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나가서 이걸 보고 기자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더 이상 회의 못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소위원장 박주민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진 위원 우리는 합의안에 충실하게 법조문을 만들었습니다, 합의문에 충실하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제발 4조부터 축조심사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 표결처리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왜 이제 할 수가 없습니까? 계속 논의를 해야지요.

○김영배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주민 말씀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제가 법사위기는 하지만 1소위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와 관련되어서 직무와 권한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뒀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에 속해 있는, 정부조직법상에 설치돼 있는 검찰청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청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므로 그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합의 본 사항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6대 범죄 중에 2개만 남기고 4개는 삭제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대 범죄 중에 2개가 있는데 그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대 범죄 중에서도 2개를 남기게 되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틀의 로드맵으로 가는데 그게 1번에 합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계에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총량이 어느 정도 조정될 그런 기간 동안에는 2개 범죄를 중심으로 검찰의 직무를 남겨 둔다라고 합의를 본 거란 말입니다. 이 로드맵상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명료하게 다른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법에 있는 4조(검사의 직무) 그것에 대해서도 가목처럼 ‘부패·경제범죄 중’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이외에 그 밑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합의정신, 그러니까 1번의 합의정신과…… 합의정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있는 검찰청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취지를 좀 더 분명하게 검찰청법에 표현해 놓는 게 나중에 다른 오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반헌법적이라든지 합의의 취지에 전혀 벗어나는 엉뚱한 조항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이게 대통령령에 있었을 리도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부가 사실은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면서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게 저는 당연한 국회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도대체, 문제가 있다면 어떤, 왜…… 그러면 빠자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 문제다, 저는 전혀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합의정신을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고민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주장하시면…… 아니, 그러면 대통령령을 안 읽어 보셨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사실은 내가 대통령령을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조항이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고 왜 틀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출하는 게 저는 타당한 논의다 이렇게 보고, 문제가 없으면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국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장 박주민 예.

○김남국 위원 저희가 합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문을 성안하는 작업을 꼼꼼하게 해 나가면 이렇게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자꾸만 지금 조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조문을 제출했고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성안된 조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차례차례 그대로 확인하면서 거기에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빨리빨리 심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김남국 위원** 잠깐만……

그래서 집중해서 좀 심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김남국 위원님, 지금 집중하지 않은……

○**김남국 위원** 자꾸만 이 문안을 들고 나가서 합의 파기네 마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상범 위원** 김남국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잘 알아들었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조정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요? 의장님께서 당신이 수석전문위원에게 지시해서 중재안에 대해서 성안한 초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안을 만든 기준은 이 성안한 초안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안은 여기에서 성안한 초안과는 전혀 다른 안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면 법안을 논의할 때 어떤 법안을 가지고 논의할 겁니까? 이 법안 가지고 논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 낸 안 가지고 이게 옳은지, 이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 내용이 만일 조금 문제가 있다면 다른 법으로 바꿀지 이렇게 논의를 해야지. 여기 있는 법안, 지금 이수진 위원님께서 만들었다고 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법안이 이것과 전혀 다른 법안을 들고 왔잖아요.

김영배 위원님 한번 보세요.

○**김남국 위원**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 이 안은 이거 두 줄짜리를, 뭘테요?

○**유상범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의 내용은 단일성과 동일성이 공소장 변경의 기준을 잘못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별건 수사 금지라고 분명히 제목에 있잖아요. 별건 수사 금지의 내용과 그 앞에 있는 설명이 전혀 일치를 하지 않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뭘로 판단해야 되느냐? 원래의 목적이 별건 수사 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내가 198조 4항에 별건 수사 금지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낸 것은 이 초안과 전혀 관계없는 안을 내고 마치 이것이 의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 안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처럼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법안을 내면서 이게 합의정신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표결처리 합시다.

○**김남국 위원** 그러면 박주민 위원장님, 빨리 좀……

○**소위원장 박주민**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제가 아까 먼저……

자, 이 안을 만들어 온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석전문위원이 만든 안은 의장님이 중재한 것에 따라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고, 지금 민주당 위원들께서 빨리 논의를 하자, 표결을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늘 의사일정들을 이미 예정하고 지금 이 논의에 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논의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자, 저기 기관에서 나와 있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민주당의 이 안 받으셨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받았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조문별로 이게 이러하고 저러하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김남국 위원** 아니, 지금 봤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지금 심사하면서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박형수 위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남국 위원** 아니, 당연히 모르지요. 지금 받았는데 어떻게 의견을……

○**박형수 위원** 당연히 모르는 걸 지금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남국 위원** 심사해 가지고…… 같이 의견을 물어서 심사하자는 게 취지잖아요.

○**박형수 위원** 그것 충분한 시간을 주고 논의를 해야 되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꾸 김남국 위원님 끼어들 겁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박형수 위원** 행정처 차장님.

○**소위원장 박주민** 정리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행정처 차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여기서 하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 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형수 위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형수 위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법무부차관님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안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좀 살펴볼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또 우리 경찰청 차장님 어떻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 답이 아닌데요. 그렇다 치고. 검찰에서 나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이 안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 안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고, 민주당은 어제 이걸 성안하면서 충분히 검토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각 기관도 자기 의견들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내놓고 여기에서 심의하자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196조 7항을 찾아보는 데만 해도 지금 몇 시간이 걸려요. 몇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한참 걸려요.

○소위원장 박주민 196조, 몇 조를 찾는 데 몇 시간이 걸리신다니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하신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형수 위원 조문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찾아봐야지.

○전주혜 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것 보세요. 4조 2항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내용입니다. ‘형법 129조에서 133조, 355조 및 356조의 죄’, 지금 이런 게 어디에 몇 조에서 지금……

한번 여쭙볼게요. 합의문 몇 조에 따라서, 지금 몇 항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제가 아까 누가 동영상 올렸길래 전주혜 위원님이 나가서 발언하시는 걸 영상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건 사실은 충분히 정치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전주혜 위원 아니, 그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 본 사항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가 누구하고 통화를 하더니……

○전주혜 위원 김영배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 어디, 합의문 몇 조에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라고요.

○김영배 위원 최고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뒤집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버젓이 벌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걸 그냥 합의를 파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몰려 있는 입장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무조건 그냥 의도적으로 마치 민주당이 뭘 파기하는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시는 이런 식의 반복된 행태는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합의문 1번이 그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나와요. 합의문 1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두 번째가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2번에 검사직무를 검찰청법에서 어떻게 한다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전체의 수사와 관련돼 있는 조항들을 넣어 놓은 거고, 검찰청에 속해 있는 검사들에 대한 직무는 정부조직법상으로 거기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은 이 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나 다른 데 있는 검사들 같은 경우나 혹은 다른 특별검사나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볼 때 1번과 2번 사이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2번에 있는 그 검찰청법 4조에서 아까 얘기했던 가목·나목…… 그러니까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그다음에 나목에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가·나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

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 중에서 가목·나목이지요. 그 범죄에 대해서 합리적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게 없는 걸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검찰청법에, 대통령령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전주혜 위원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합의사항에 가장 충실하게, 명백하게 법률에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합의문 1항, 2항의 어디에 위배되는지를 말씀을 해 보세요.

○전주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2항 있잖아요. 검찰청법 4조 2항, 이게 지금 어디에서 근거해서 만드셨냐고 제가 여쭙았습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주민 잠깐만, 이수진 위원님.

○김영배 위원 대통령령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주혜 위원 검찰청법 4조 2항.

○김영배 위원 전문위원님, 검찰청법 이것 관련된 시행령 복사 좀 해 주세요.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법안 축조심사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아직 축조심사 안 들어갔습니다.

○이수진 위원 더 이상 어제처럼 진행하시면 저도 여기서 사직하겠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김영배 위원님, 우리가……

○전주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조 2항……

잠깐만, 김영배 위원님.

잠시만요.

○유상범 위원 우리가 말씀이 자꾸 4조 2항, 다항, 나항을 말씀하시는데 합의안에서……

○이수진 위원 저도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소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수진 위원 도대체 어제부터 축조심사 한다 하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지금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논의하는 게 우선이어서 논의하고 의견을 듣는 거고요.

○이수진 위원 어제도 12시까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유상범 위원 이수진 위원님, 지금 위원장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정회하시지요. 잠시 정회하시지요.

○이수진 위원 축조심사 해 주세요, 빨리.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면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것 하시고 그 사이에……

○소위원장 박주민 20분 정도 정회하고 속개하면 축조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 그 사이에 잠깐, 위원장님……

우리 부처에서 오신 차관님, 차장님들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주민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자료가 배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도대체 수정안이 몇 번, 안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소위원장 박주민 아까 논의하신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겁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하신 설명자료 중에서 7페이지는 아까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논의한 다음에 민주당 안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아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 속개하면 축조심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축조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전주혜 위원 이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순서상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고 나서 축조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됐으니까 이걸 마무리하고……

○소위원장 박주민 의사진행 방향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께서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만들어 주신 조정의견 관련된 자료 7페이지를 먼저 논하고 민주당 안을 축조심사하자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김남국 위원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제안한 법안이 조정의견을 다 반영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포함된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금 시간도 너무 늦어져 가지고……

○전주혜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이것은 지금……

○김남국 위원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 축조심사를 하는 게 시간을……

위원님, 제가 아직……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전주혜 위원 이것은 합의 내용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국 위원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안도 합의안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조정의견도 사실은 굉장히 의장님께서 주신 중재안을 바탕으로 해서 합의안을 중심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합의안에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를 예정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도 축조심사예요. 축조심사인데 우리가 중재안에 따른 축조심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57조에 보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서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발인을 제외하면 고발인이 고발을 했는데 불송치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고발인의 불송치도 다 끝납니까?

고발에는 공익적 고발도 있고 다양한 고발이 있어요. 그런데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발인이나 고소인이나 사건 관계인들이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의 권리에요. 그런데 합의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도 없이 합의 과정에서 지금 인권 침해, 권익을 우리가 거꾸로 침해하는 거예요.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냐고.

차장님!

○김남국 위원 축조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지금……

거꾸로 한다고 지금 순서를 바꿔 갖고 하면……

위원장님,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저희가 상당히 기다렸다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유상범 위원 이거 지금 저희가 기다렸지……

○김남국 위원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갑자기 뒤죽박죽 이렇게 하면 맞지가 않지요.

○유상범 위원 나는 여기서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원래 20분 하기로 했지요. 20분씩이었는데 그동안 뭐 했어요? 나 여기서, 소회의실에서 자그마치 1시간 20분 기다렸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정리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저도 기다렸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아니, 그건 여러분들이 안 와서 기다린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주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님이 어느 분에게 여쭙보신다고 그러셨지요?

○유상범 위원 행정처 차장님.

○소위원장 박주민 의견 듣고, 여기까지만 듣고 전문위원님이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고 나서 축조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245조의7에 보면, 이 자료 받으셨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받았습니다.

○유상범 위원 245조의7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지금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어요.

즉 사건 관계인이 적법하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고발인은 제외시킨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어요. 고발인이 제외될 근거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대답을 할까요?

○유상범 위원 예, 대답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이 부분은 245조의6, 바로 앞에 있는 규정인데요 그거랑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245조의6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

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45조의6에서 통지를 받았는데, 그리고 245조의7이 바로 그 통지받은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받은 사람 중에서 일부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러면 통지는 뭐 하러 해 주는 건지 이게 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위원** 우리가 행정처 차장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통지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을 해 놓고 245조의7에서는 그중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부당한, 고발인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권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근거가 뭐예요? 그냥 합의하면 이의신청권이 없어집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조정의견에는 아예 고소인만……

○**유상범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합의문에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소위원장 박주민** 잠깐 말씀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왜 그럼 조정의견에는 고소인만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상황과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먼저 이 합의문 4항에 따라서 특별히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합의문 원문, 원내대표하고 의장님 서명이 돼 있는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항입니다.

전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그러니까 조 제목은 ‘고소인등’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고소인만 특정해서 이의제기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취지가 이의신청은 고소인만 하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의견, 어제 설명드린 대로 지금 고소인에 한정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그럴 경우에 고소를 안 한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어제 보

고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 의장님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때 배석했던 분의 메모 또 그분의 전언을 들었을 때 고발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네 분이 꽤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어떠십니까?

○**박형수 위원** 그 부분은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박형수 위원** 예,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고소인에 대해서, 고소인을 제외하는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주민** 고발인, 고발인.

○**박형수 위원** 얘기가 나왔을 텐데 전혀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고발인.

○**박형수 위원** 예, 고발인을 제외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만약에 그 얘기가 나왔으면 제가 이 조항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다 있는데 고소인으로 왜 한정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얘기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기존 조문을 그대로 하는 걸로 전제를 해 갖고 얘기한 겁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 이 조문에 따르면 아예 고발사건은 불송치 결정하면 다룰 방법도 없습니다.

검찰국장님, 이 부분이 고발인의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해 주세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고발인에게는 법률상 재정신청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차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그냥 1심에서 끝나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고발사건은 1·2·3심이 아니라 그냥 1심에서 끝나는 그런 결과라 이것은 고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김영배 위원** 동의하고 이제 축조심사 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아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시지요, 그러면 고발인은 포함되는 걸로.

○**김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축조심사 합시다.

○**김남국 위원** 예, 고발인은 넣고.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주혜 위원** 그것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야.

○**소위원장 박주민** 고발인을 넣는다면 이 조항은 유지될 필요가 없겠지요.

○**유상범 위원** 삭제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포된 자료를 기준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어떤 것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검찰청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제4조(검사의 직무)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 민주당 안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맞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우선 아까 정회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서 가져오신, 이거 제출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사이에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후다닥 다시 수정을 하신 걸 보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 이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 가항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중’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합의문의 내용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문에, ‘등’을 ‘중’으로 바꾼다고 한다는 건 이 합의문을 벗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문에 보면 지금 4조 1항 관련해서는 가목 중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삭제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목 그리고 2항을 규정한 것, 이것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삭제를 하고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그대로 또 민주당에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항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건 합의문에 지금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빼야 되는 것이고요.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법무부차관께 여쭙볼게요. 이 합의문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거 검찰총장한테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대검 기조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규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합의문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부패범죄, 경제범죄 부분 말씀하시나요?

○**전주혜 위원** 검찰청법 수정안 4조 4항.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은,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잘 안 들려요.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은 24조 4항입니다. 그래서 24조 축조심사할 때 여쭙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24조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24조입니다.

○**전주혜 위원** 예.

○**소위원장 박주민** 죄송합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지금 답변 준비하시고 24조 심사할 때 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분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주혜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또 이렇게 강행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박주민 간사님!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24조 관련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박주민 위원님!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전주혜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박주민**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24조 아까 여쭙보셨으니까.

○**박형수 위원** 4조 관련해서 1항 다목에 보면 괄호 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이거는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별건 수사를 금지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아까 논의를 해서 그걸 다 합의를 봤는데 검찰청법에다가 다시 이 단일성·동일성 개념을 넣어 놓은 이유가 도대체 뭐니까, 이게?

법무부차관님, 아까 우리가 논의를 충분히 했었지요? 합의문에 따르면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조문을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여기다가 괄호 치고 원래대로 넣어 놓으면 아까 얘기한 거는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차관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건 수사 금지에 관한 조문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신지는 제가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박형수 위원** 아니, 차관님 이해가 안 돼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아니,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박형수 위원** 이걸 보십시오. 검찰청법 수정안 4조의 1항 다목을 보십시오. 다목 보면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해 놓고 괄호 치고, 2페이지에 보면 괄호 안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형사소송법 얘기를 하면서, 원래 합의문에 있는 것은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것인데 그 별건 수사의 개념을, 단일성·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 별건 수사 규정인 다른 사건을 수사할 목적으로, 아까 법원 차장이 얘기한 ‘수사할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그걸 넣기로 했잖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것은 형사소송법……

○**박형수 위원** 그런데 그 조항을 다시 여기다 넣어 놓으면 아까 얘기한 거는 취지가 지금 전혀 없어져 버린 것, 몰각된 거지요. 아까 그게 다시 되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그것은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박형수 위원** 아니, 여기다가 규정을 해 놓으면 형사소송법에다가 해 놓은 거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잖아요. 이걸 당연히 빼야지.

법원행정처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잠시 말씀 좀 드리고……

○**박형수 위원** 대답 안 하셨어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에 관한 규정이 198조의2로 신설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것은 된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여죄수사 금지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정안에 따를 경우는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는 일선의 우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검찰국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일단 법무부에 물어봤으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아까 처음 회의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다뤄졌던 주제처럼 합의문 4항에 관한 해석을 하심에 있어서 저희들도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의 조문을 단일성·동일성 논의를 포괄해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어갔는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형수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까 회의에서 정한게, 형사소송법 198조 4항에다가 규정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건을 수사할 때 부당하게 별건 수사하면 안 되는 거다 큰 원칙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이렇게 지금 ‘단일성·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이런 규정을 안 두셔도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박형수 위원** 이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지금

검찰도 얘기하고 국민들께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수사를 하는 중에 다른 별개의 범죄 사실이 나타났을 때 그게 동일성과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범죄를 오히려 비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걸 논의를 해서 아까 아침에, 지금 오후에 별건 수사라는 그 개념으로 이것을 한정하고 이걸 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여기다가 넣고.

2항에도 마찬가지로, 2항은 뭐냐 하면 검사가 보충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예요, 이게. 그러면 검사는 보충수사를 할 때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그 범죄에 한해서만 보충수사를 해라 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들은 첫 번째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빠져야 되고 2항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수사는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것도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까 형사소송법 논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전주혜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4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항은……

○전주혜 위원 4항은 이따 얘기하기로 했어요.

○박형수 위원 얘기 안 하기로 했나요?

○소위원장 박주민 4항은 24조 관련된 심사할 때……

○박형수 위원 좋아요. 그러면 4항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부칙 3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소위원장 박주민 부칙도 지금…… 축조심사 때는 이 4조만 얘기하시면 되고요.

○박형수 위원 좋아요, 그러면 4조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주민 4조에 대해서는 더 의견 없으시지요?

○전주혜 위원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있다니까요.

○소위원장 박주민 한 번씩 얘기하셨으면 되셨을 것 같아요.

○전주혜 위원 아니, 있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유상범 위원님, 아까 4조에 관련해서 말씀 안 하셨으니까……

○유상범 위원 이 합의안은 정신이 뭐냐 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검사가 가지고 있는 보완적 수사권, 보충적 수사권은 보장한다, 이게 합의안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수사권도 6개에서 2개로 줄인다는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갑자기 4조의 다목을 보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렇게 해 놓고 또 단일성·동일성을 집어넣어요. 이것은 모순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여기서 직접관련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련 사건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단일성·동일성이 없는 관련 사건이면 관련 인지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먼저 법무부차관님,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유상범 위원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당해 사건과 단일성·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검사의 수사범위에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이 저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다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법무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결국은 범죄가 있을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누가 수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그 부분하고 그렇게 됐을 때의 남용 가능성이냐 여기에 대한 교량적인 비교 형량을 통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만 따져 보면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발견한 여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게 효율성이, 측면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유상범 위원 우리가 논의한 것 중에, 그러니까 먼저 논의한 것은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지어 준 거예요, 별건 수사 금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수사를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기다 규정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공소장 변경 기준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갑자기 검사의 수사 범위를 또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적절치 않은 제한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제한이고 헌법에 위반된 제한이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검찰국장, 이렇게 제한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법조문에 들어왔는데요, 원래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제일 익숙한 것으로는 공소장 변경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재판 단계에서 보장하는 기준으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수사라는,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해서 사안의 전모를 밝히는 수사 단계에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동일성·단일성의 개념을 사실상 송치된 범죄랑 같은 범죄, 그러니까 송치된 범죄 이외에는 일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담으신 거라고 한다면 진범이나 공범, 추가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작년, 재작년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n번방 사건에 있어 가지고 송치 이후에 검경이 협력을 해 가지고 전모를 밝히고 범단조직으로 의의를 해 가지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숙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결국 검찰의 종합적인 사건 처리를 통해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고 사건 당사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빨리 해소하자는 건데 이것을 못 하게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수진 위원** 축조심사 진행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지금 축조심사 하잖아요.

○**이수진 위원** 진행하라고요.

○**유상범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내용을 또 2항에다가 동일하게 ‘단일성·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규정 형식조차도, 지금 동일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중복 규정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앞의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하는 사건을 열람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런 식의 조문 규정 형식도 타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검 기조부장!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유상범 위원** 대검 기조부장은…… 지금 사건 수사에 있어서 단일성과 동일성을 얘기하면서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합의문에서 인정했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하겠다는 이 합의문의 정신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라는 것이 내 입장이고 또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헌이다, 왜냐하면 검사의 수사권을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내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기조부장은 의견이 어때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저도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n번방 사건도 그렇지만 계곡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1건의 보험금 편취 미수, 살인사건으로 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철저히 보완수사해서 여죄를 밝혀 가지고 이전에 복어독 살인미수라든지 낚시터 살인미수와 같은 여러 살인미수 사건을 추가로 규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동일성·단일성 기준으로 해서 못 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수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형사부 검사들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 조그마한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사안의 전모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수 수사 사례라고 저희가 격려하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도 못 하게 한다면 그런 우수 수사 사례들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형사부 검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죄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할 때 검사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죄와 관련해서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 12조와 16조에 의하면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의 주체는 검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죄에 관한 보완수사가 완전히 금지돼서 완벽한 검수완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법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를 헌법상 압수·수색, 체포·구속의 주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하지 못하게 돼서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죄가 밝혀져서, 여죄가 있을 때 검사가 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사지휘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있어서 영장 신청을 하도록 경찰에 지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그 여죄가 눈에 보이더라도 경찰한테 지휘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할 수가 없어서 그 여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 12조와 16조는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사는 아무런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적 사건, 모든 송치 사건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를 못 하고 보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못 하게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확하게 위배됩니다.

따라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지휘권도 없고 보완수사권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면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입법 재량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에서 아주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은 현재 헌법 12조와 16조가 예정하고 있는 압수·수색, 체포·구속을 검사가 하도록 하는 그 헌법의 명확한 규정에 명확하게 반하기 때문에 저희 대검에서는 명확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행정처 차장님,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위헌설도 있고 합헌설도 있는데 저희가 쪽 한번 교수님들 의견을 스크린해 봤더니 위헌설이 다수설이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3항의 ‘검사는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 업무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시행했던 것은 공수처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했는데 올해 3월에 수사·기소 검사를 일원화했어요. 그리고 분리를 예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면서 그 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했던 공수처에서도 이미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해 가지고 수사·기소 검사를 일원화했는데 지금 뒤늦게 직접수사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가 수사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입법을 하는 것은 사실 합의문 정신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합의문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유상범 위원** 아니, 합의문의 정신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지금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에 입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좀……

○**소위원장 박주민** 세 분 의견을 다 들었고요.

○**전주혜 위원** 아니요,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박주민**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4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까.

○**전주혜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 말씀하실 겁니다.

○**전주혜 위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진행을 안 하느냐고 항의를 하시고……

○**전주혜 위원** 저는 4조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만, 이것은 이해상충이 되는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그러면 하나만 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하는데 그걸 논의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전주혜 위원** 지금 시간을 정해 놓고 아마 작전 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아니, 분명히 보완수사권을 보장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 와서 입법으로 보완수사권을 박탈해 버리는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되죠.

○**소위원장 박주민**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 축조심사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아니, 이것은 처음 하는 얘기에요, 처음 하는 얘기.

○**전주혜 위원**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청법 이것은 아까 정회하기 직전에 제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말씀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대검 기조부장님!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전주혜 위원** 여기 보면, 지금 4조의 다목을 보세요, 민주당 수정안 4조 1항 다목.

다목은 뭐냐 하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지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전주혜 위원** 그것은 원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수정안을 보면 이 경우에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결국은 관련성이 있는 사건조차 조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송치한 그 범죄사실에 딱 국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명확히 됩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은 지금 4조 1항의 다목은 아예 합의 조항에도 없는 것입니다만 관련성이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지금 박탈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민주당이 정회 전에 제출하신 법안에 보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것을 그냥 차용해 가지고 법안을 내셨던데 거기에 보니까 3조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성과 단일성과는 관계없는 얘기지요. 여기 보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예를 들어서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범죄와 동종 범죄,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129조에서 133조……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도 관련 범죄로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기조부장님. 지금 민주당의 이 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건만 결국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흔히 나올 수 있는 위증이나 무고, 이것을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그렇습니다. 위증 수사 못 하고 무고 수사 못 하고 여죄 수사 그리고 진범이 바뀌었을 때 진범 수사, 범죄수익 환수 이런 것들 일체 못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합의문 2항에서는 직접수사 할 때 6대 범죄 중에서 4개를 뺀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개악을 함으로써 오히려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관련 수사조차도 수사를 박탈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현재 저희 검찰에서, 특히 형사부 검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작용 같은 것들이 완전히 마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 다목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괄호에 단일성, 동일성을 집어넣음으로써 이걸 오히려 형해화시켰다, 오히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할 수 있는 직접수사권을 형해화시켰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2항 보겠습니다. 2항에서 보면, 2항도 물론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 보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도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은 직접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보완수사 아니에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그렇습니다. 일반 평범한 형사부 검사실에서 송치를 받았을 때 송치된 범죄사실만 보완해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추가되는 여죄라든지 관련된 공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 규정은 지금 4조 2항에 들어갈 게 아니고요 이것은 보완수사의 규정,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이것을 기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지금 보완수사,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수사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한 것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공소 제기 여부 그 자체, 송치사건에 대해서 범죄사실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수사는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 민주당이 하시는 걸 보면 아마 이제 작전 개시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자마자 표결 처리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안의 4조 1항 1호의 가목 중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이것은 합의안에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오히려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 기존의 검찰의 적법한 수사권을 손발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검수완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안에 없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구요.

2항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완수사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검찰청법에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의안을 벗어나는 내용이다.

이래서 이 세 가지를 민주당이 고집을 한다면 이것은 지난 22일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3항 부분의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3항?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3항 부분이요. 여기 지금 ‘공소의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고요.

○소위원장 박주민 공소의 제기를……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공소 제기 행위만 딱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공소 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가 된 게 아니다 하는 걸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일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검사는 제1항제1호 가·나목에 의하여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 이렇게 해야 이게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 버리면 모든 사건을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될 여지가 있어서 ‘제1항제1호 가·나목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문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회의 할 때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피고인이 다 자백하고 다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공소 제기 못 하는 거냐, 불필요하게 다른 검사한테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맨 끝에다가 단서를 하나 달아서 ‘다만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그런 걸 하나 두어야 불필요한 이런 수사력의 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술적인 문제, 문구를 좀 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얘기하신 부분은 어떠십니까?

○이수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사 개시한 거라는 것은 지금 4조에서 수사 개시하는 범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수사 개시를 못 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러니까 지금 1항에 가·나만 하고요. 다는……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다시 써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사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처 차장님이 관여하실 바가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수사인력?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는 사건……

○이수진 위원 그것까지 여기 넣을 수 없다고요! 이것 지금 합의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수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합의안에 들어간 대로 우리는…… 여기에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합의문!

○전주혜 위원 지금 합의문은 민주당이 어기고 있잖아요.

○이수진 위원 합의문에 여기 써 있잖아요, ‘권성동’!

○전주혜 위원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수진 위원 아니, 지금 합의문에 없는 얘기를 왜 행정처 차장님이 꺼내고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 지금 검찰청법 이 자체가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 합의문의 내용의 단일성·동일성이 우리가 별건 수사 금지를 하는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에 넣었지 않습니까, 198조 4항으로?

○이수진 위원 자, 중수청이 6개월 내에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1년 이내에 발족시키면 검찰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내로 폐지합니다. 뭘 자꾸 늘려 달라고 합니까, 지금?

○김남국 위원 맞는 말씀 하시네.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주민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제기하신 부분 중에 ‘공소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를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타당해 보이고요.

이 정도로 하고 2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 많은데요……

○전주혜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다만’으로 해 가지고 단서로 하지요.

○최기상 위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 단서로 보완을 해야지 그것을……

○이수진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박주민 24조로 축조심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주민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다목까지 포함되잖아요, 4조 1항 다목까지.

○유상범 위원 그러면 모든 사건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한이 없으면 안 되고……

○소위원장 박주민 1항 합의문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도 할 말 많은데요.

대검 기조부장님, 이 합의문 양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검사분들이 여러 채널과 여러 형태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의견 표명을 하셨지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소위원장 박주민 그게 뭐였어요? ‘검사 수사권 다 뺏기는구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검수완박법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소위원장 박주민 그렇지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소위원장 박주민 그게 이 합의문의 정신입니다.

○전주혜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박주민 여러분들도 이미 내용을 다 아신 거예요. ‘이 합의문대로라면 수사권이 많이 줄어드는구나’라고 검사분들도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합의문의 정신과 다르다’ 또는 ‘합의문의 정신은 그것과는 또 다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항의하신 것, 이의 제기하셨던 것하고도 안 맞아요.

안타깝지만 합의문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가 의장님의 요구사항이었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었고 양당이 의총에서 의결한 겁니다.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그런데 합의문에서는……

○소위원장 박주민 안타깝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은 많지만.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무슨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십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의 의사를, 견해를 지금 기관에 출석한 분들한테 그렇게 설교하듯이 강요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합의문의 정신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박형수 위원 합의문 얘기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디 합의문에 관련 사건 일체를 수

사하지 못하고 여죄 수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 합의문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소위원장 박주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박형수 위원 그것은 별건 수사에 대한 것이라고 오후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김남국 위원 아니요, 별건 수사라고 안 돼 있고요. 여기 4항에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또 적시해 놔줍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괄호 치고 여기 ‘별건 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남국 위원 그래서 ‘검찰의 시정조치요구 사건’, 그다음에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 등’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직접수사하거나 송치된 사건이나 보완수사하는 사건에서도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별건 수사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 이렇게 ‘등’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박형수 위원 별건 수사의 개념이 뭐니까, 김남국 위원님?

○전주혜 위원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김남국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김남국 위원님, 아까 논의할 때 어디 가셨었어요? 김남국 위원님, 아까 논의할 때 별건 수사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때문에 합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영배 위원 자, 의견 다 얘기했으니까 진행하시지요, 계속 같은 말 하지 마시고.

○김남국 위원 이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박형수 위원 그리고 단일성, 동일성의 개념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거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전주혜 위원 아니, 이 합의정신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게 2페이지하고 4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렇게 하려면 표결합시다, 표결!

○이수진 위원 표결로 하자고요, 제발 좀!

○김영배 위원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유상범 위원 아니, 소위에서 언제부터 표결을

해요!

○김영배 위원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냐고요, 이야기하셨으면 됐지!

○이수진 위원 도대체 며칠을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전주혜 위원 2페이지하고 4페이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요.

○김영배 위원 의견을 표명하셨잖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 이 중요한 걸 저쪽에서, 검찰에서도 위헌성 얘기를 하고 위헌 의견이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뭘 어떻게 합니까?

○김영배 위원 축조심사 중이잖아요, 축조심사.

○이수진 위원 아니, 현재로 가서 판단 받으세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축조심사하고 있잖아요.

○전주혜 위원 지금 합의의 범위를 넘어서서 조정안을 만들어 왔잖아요, 이게.

○김영배 위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냐고요.

○유상범 위원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이수진 위원 제발 이제 표결 좀 합시다, 우리 다 퇴장하기 전에.

○유상범 위원 퇴장을 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박형수 위원 퇴장하세요, 그러면.

○전주혜 위원 수석전문위원이 만든 2페이지하고 4페이지에만 있습니다, 검찰청법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걸 벗어나서 만들어 왔잖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이 조금 의견을 내실 게 있다니까 한번 들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4조 2항 관련해서요, 일단 여기 보면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만을 위해서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송치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한 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 이것이 4조에 1항 1호에 보면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김남국 위원 일단 끝까지 좀 들어 보세요.

○**김영배 위원** 말씀 듣고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그다음에 2항 자체가 비문입니다. 주어가 ‘필요한 수사’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주어가, 주체가 ‘검사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 조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는데 위증 수사 가능합니다, 이 조문에 의하면?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예?

○**유상범 위원** 위증 수사 가능합니까, 공판검사가? 이 조문에 의하면 말씀대로 하면 위증 수사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가능해요?

○**박형수 위원** ‘당해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유상범 위원** 당해 사건이 아니잖아요?

○**박형수 위원** 법률가라면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유상범 위원** 그러면 무고죄는 가능합니까? 이 사건 수사하면서 무고죄 수사 가능해요, 이렇게 규정하면? 수석전문위원님, 가능해요, 안 해요? 못 하지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지적하는 거예요. 관련 사건으로 가야 될 것을 지금 단일성, 동일성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위원님, 저한테 질의하실 게 아니고 위원님들 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아니, 저는 여기서 공소 제기 여부 결정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치사건의 공소 유지가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관련 사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련 사건을 형사부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가평 살인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n번방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걸 막자는 겁니까? 그것 못 하게 할 거예요, 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유상범 위원**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성폭력 사건의 진범이 나타났어요. 그 수사 안 해야 돼요?

○**전주혜 위원** 지금 관련 사건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여러분은 지금 검사가 그러면 수사 아예 못 하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김남국 위원** 위원장님, 빨리 진행 좀……

○**유상범 위원** 김영배 위원님, 대답 좀 해 보세요.

○**김영배 위원** 제가 왜 대답을 해요?

○**유상범 위원** 왜 대답 안 해요? 대답 못 하면서 이 법을 어떻게 주장하냐고!

김남국 위원님, 그것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수사 안 해도 되냐고!

○**김남국 위원**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소위원장 박주민**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2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요, 저 민주당에 좀 물어볼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전주혜 위원님, 24조 관련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전주혜 위원** 아니요, 하나만 물어…… 책임지고 대답을 하세요.

뭐냐 하면 아까 수정안 버전1 낼 때는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답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그냥 두들기고 손 들려고만 준비하는 거예요, 다들?

최기상 위원님, 대답할 수 있어요? 검사들이 그런 수사 안 해도 돼요? 그런 수사 안 하게 법을 만들어도 되냐고. 최소한 우리가 법조인이면 법조인이 갖고 있는 기본상식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형수 위원**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도……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민주당 위원님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든 날치기를 하든 여러

분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된 법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뒤가 지금 모순되는, 관련 사건 인지를 하도록 해 놓고 거기다 팔호 치고는 못 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저는 법률가가 어떻게 이 배치되는 조항을 같은 조항에 팔호 치고 넣어 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인지는 하되 직접수사는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박형수 위원 뭘 소리입니까, 그게?

○소위원장 박주민 경찰 쪽에 사건을 내려보내라는 뜻이에요.

○박형수 위원 인지하고 직접수사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소위원장 박주민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라는……

○전주혜 위원 그러면 인지하면 경찰에 넘겨요?

○김남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합의한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주혜 위원 그것은 김남국 위원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고요.

○유상범 위원 여기에 김남국 위원보다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24조 관련된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합의안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폐지하라는 거거든요.

○유상범 위원 말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소위원장 박주민 24조 관련된 의견 없으시면……

○유상범 위원 이해 못 한다니? 여기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주혜 위원 직접수사를 못 하면 보완수사를……

○소위원장 박주민 24조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남국 위원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유상범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완수사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부칙 관련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부칙 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주민 부칙 관련되어서 이견 있으신 분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주혜 위원 뭐가 없어요? 지금 24조……

○박형수 위원 부칙 제가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박주민 말씀하십시오,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공소시효를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했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선거범죄.

○박형수 위원 선거범죄에 대해서. 이거 누구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지방의회 출마하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여든 야든. 이 법률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지방의회 의원들만 공소시효 연장해서 그 사람들은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은 이 대상에서 빠져 버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법률 이전에 상식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김남국 위원 저는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박형수 위원 김남국 위원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국민들을?

○김남국 위원 왜 선거범죄는 검찰에서만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박형수 위원 왜 검찰에서만 수사합니까?

○김남국 위원 위원님, 제가……

○박형수 위원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다 해요.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검찰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잖아요?

○김남국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이 합의문이 지금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로 돌아가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수진 위원 표결 처리합시다, 제발.

○김남국 위원 4대 범죄 없애고 직접수사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1년 6개월 뒤에 부패와 경제범죄 없애도록 했는데 또 지금 선거범죄 주자고 그러면, 지금 그 논리로 가면 1년 6개월 뒤에도 아

무것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러 지금 이 논의를 해요? 그것 원내대표한테 왜 합의 했냐고 그래야지요.

○박형수 위원 법률을 만들 때는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법률을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됩니까? 국회의원들만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 법률 만들려고요?

○김남국 위원 아니, 지금 합의한 것 가지고 조문을 만들자고 하는데 합의한 정신에 위배되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선거범죄 이야기가 합의안에 들어가 있어요?

○박형수 위원 이것을 굳이 넣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남국 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는 의총 가서 원내대표한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이것을 넣자니까,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요.

○전주혜 위원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개정안을 만들었으니까 민주당이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민주당이 설명해 주세요.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 정의당 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의당 안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민주당에서 만드신 위원님이 이것 설명해 주세요, 왜 이래야 되는지.

○유상범 위원 이것 누가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이수진 위원님이 발의하셨어요?

○이수진 위원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이수진 위원님이 이 법안을 처음에 발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수진 위원 아니,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유상범 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법안을?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신 위원님이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 국민 앞에서 설명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법안 만든 사람도 없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이번 대선 때와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하는 사람을 빼 주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전주혜 위원 그런 팩트 체크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 안을 누가 만들어 왔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분명히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 있는 위원님이 왜 이 법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주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남국 위원 설명을 드리면, 앞서 박형수 위원님께서도 선거범죄와 관련되어서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선거 사건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 사건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계속 중인 어떤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칙 3조를 이런 내용으로 수정한 겁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과 또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의견 주신 것을 반영한 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합의문에 보면, 합의문 1항이 아까도 봤지만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게 1항이에요. 거기부터 죽 나와서 FBI 만들고,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게 향후 1년 6개월까지의 로드맵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논의가 있지만 1년 6개월 정도의 합의안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그러면서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제기는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이게 1년 6개월 이후에 폐지된다고 하고 4개 목을 빼는 그런 와중에 당면해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당장의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는 게 이 합의문 정신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국민 보시기에 좀 더 낫다 이런 이유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 합의문의 로드맵 정신에 심대하게 어긋나거나 반대되거나 국민적으로 오히려 이 합의문의 정신과 거꾸로다 이런 비판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문제 제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장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결국 이 합의문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당장 처리할 거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축조심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각자 개인적인 자기 견해를 자꾸 반복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대안 중심으로 논의를 빨리하고 종결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부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들으신 것 같고요.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까 24조는 24조 할 때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24조 할 때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셨어요.

○이수진 위원 넘어갔어요.

○전주혜 위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셔서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순서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견 있나라고 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수진 위원 이제 그다음 하세요.

○전주혜 위원 24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죄송하지만 제가 분명히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전주혜 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이수진 위원 부칙 해 주세요.

○전주혜 위원 아니, 24조에 대해서도 합의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통과시키는 건 좋은데, 일방 강행 처리하는 건 좋은데 이 정도는 해야지요.

○전주혜 위원 24조도 합의문 내용에 없어요.

○이수진 위원 표결해 주세요.

○전주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 합의문 몇 조에 의해서 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남국 위원 표결, 표결……

○이수진 위원 표결 절차 밟아 주시길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형사소송법 하고 2건을 한꺼

번에 표결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표결을 그렇게 좋아해.

○유상범 위원 소위에서 표결 계속 할 거예요?

○이수진 위원 예.

○전주혜 위원 이것 설명 못 하십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형사소송법 넘어가기 전에 검찰청법 부칙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주실 의견이 있으시답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세요.

○유상범 위원 잠깐만, 24조 4항이 합의문에도 없는데 이것을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법안을 냈으니 설명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전주혜 위원 그것은 설명을 주셔야지요.

○이수진 위원 설명했는데요.

○유상범 위원 어떻게 들어왔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 수석전문위원님의 부칙에 대한 말씀 듣고 민주당 위원님들 중 누구 한 분이 설명을 좀 하십시오.

○이수진 위원 아까 설명하지 않았어요?

○유상범 위원 24조 4항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안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조정의견 보고드렸을 때 부칙 관련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이 오늘부터……

○유상범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부칙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24조 4항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주민 유상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회의는 제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전문위원님께 부칙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24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하고 부칙을 들어가야지요, 순서가.

○소위원장 박주민 아까 부칙을 얘기하던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부칙 얘기를 한 참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부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24조에 대해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문제 제기하시니까 그러면 부칙 얘기를 마무리 짓고 24조 하자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이예람 중사 관련된 특

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제가 어제 보고드릴 때 조정의견 첫 번째 사항에서 부칙 관련해서 공수처 검사와 상설 특별검사 그리고 지금 이예람 중사 관련된 특별검사에 관한 법에서 검찰청법 4조를 준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그 규정을 배제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보고를 드렸고요.

여기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24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의 취지가 뭐고 그다음에 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 책임 있는 위원님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특수부를 몇 개 하고 이런 건 법률에 넣는 게 부적합하니까 그것을 빼는 대신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특수부를 어떻게 줄이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이 조항을 넣자고 해서 넣은 겁니다.

○전주혜 위원 누가 넣자고 그랬어요?

○유상범 위원 이수진 위원님, 그러면 합의문에 이 조항의 근거가 어느 거예요?

○이수진 위원 아니, 합의문에 특수부 나와 있지 않아요?

○유상범 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이수진 위원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반부패 이것을 감축하는데 감축한다는 조항을 직접 넣는 건 좀 이상하니까 감축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주혜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고해요?

○유상범 위원 지금 수사 개시해 가지고 사건 내용……

○이수진 위원 합의문 3항에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유상범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수진 위원 남겨진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것을 법조문으로 우리가 만들었다가 여러분들께서 이것 너무나 이상하다 하셔서 빼는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하

고 있는지 국회에 보고는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수진 위원 아니, 합의문에 있는 걸 넣는 대신 더 약하게 해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한 거지요. 합의정신에 맞는 거지요.

○전주혜 위원 합의문에 없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합의정신에 맞는다?

○이수진 위원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합의정신에 맞으면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요?

○이수진 위원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형사소송법 축조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여기 민주당 개정안에 보면 부칙 2조, 4조 2항입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부칙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주혜 위원 예.

○소위원장 박주민 부칙 2조, 4조 제2항.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4조 3항으로 돼야 됩니다.

○전주혜 위원 4조 3항이잖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3항입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기 나오신 행정처에 한번 여쭙볼게요.

행정처 차장님, 부칙안에 따르면 이제 4개월 후에는 직접수사권이 4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전주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거 사건이랄지 아니면 공무원 범죄랄지 그런 게 4개월 이후에는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합의문에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고 부칙에도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합리적으로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검정 수사권 조정할 때도 부칙에 어떤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전

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어떻게 하였는지 그때의 관례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제 형사소송법 하지요.

○유상범 위원 검찰국장 얘기하세요. 설명을 좀 해 줘야 되겠네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그러시지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이 부분에 관한 게 아예 발언 기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까 4조 3항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릴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검찰청 내부의 사무 운영 문제라고 생각해서 조문화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조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조 1항에 가·나는 모르겠는데요. 다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송치 사건한 사람의 기소는 A가 결정하고 A는 관련돼 가지고 추가로 발견한 것은 자기가 기소를 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가·나목으로 꼭 제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실제로 경찰관 범죄, 공수처 직원 범죄까지 이렇게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목만 해도 충분해요. 이건 제한을 해 줘야 된다고. 직접 수사한 사람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규정을 하면 모든 사건이 이제 인지사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목이나 나목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 중요한 것은 가목이니까 가목만 이렇게 규정을 하든지 해 줘야지 자칫하면 모든 사건이 다 이렇게 돼 가는데 되겠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좀 들은 것 같고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조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196조(검사의 수사)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없습니다.

○최기상 위원 없습니다.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볼 시간을 좀 주세요. 저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말씀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검찰청법에도 이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196조에도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청법에서 빼든지 아니면 여기서 빼든지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대검 기조부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굉장히 중의적인 규정이라고 보이는데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아까 검찰청법에서 단일성·동일성을 요구하는 것과 형사소송법에서 단일성·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 이제 합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합의해서 한 것은?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이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아예 단일성·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수사 개시 뒤 범죄에 관한 규정 이것도 지금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튼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이신가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그렇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그런 보완수사가 일체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혜 위원 행정처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검찰청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여기에 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중복되는 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맞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검찰청…… 형사소송법 하나로 아예 통일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2항은 합의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같은 얘기 반복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우리 법률가의 상식과 양식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사에 있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의도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지 못하는, 수사권의 남용을 막는 그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여죄도 할 수 있고 진범도 찾아낼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단일성과 동일성이라고 하는 요건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결국은 이 합의에서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보장한다고 했던 합의를 실질적으로는 이 규정을 통해서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결국은 검사는 직접수사든 보완수사든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고 이 검수완박을 완전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범죄자만 살아나고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게 돼 있는 이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금 강행 처리합니까?

형식도 마찬가지로,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똑같은 조항을 2개를 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급하고 뭐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가, 좋아요. 그러나 법은 법처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이 봤을 때 ‘이게 법이냐?’ 이렇게 비난받아서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기 다 법률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전주혜 위원 검찰국장님, 이 196조 2항이 들어가면 이게 보완수사권이 굉장히 위축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보완수사권이 그냥 송치된 범죄사실의 유무 판단, 그러니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소법은 수사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법이고 검찰청법은 수사에 관한 권한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일성·단일성 조항이 설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단일성·동일성 조항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 나눴던 별건 수사 금지조항으로 해소된다고 보는 생각입니다만 설령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에 들어가는 것은 체계상 안 맞다고 보고요. 형소법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수사는 사실상 송치된 동일한 범죄사실 외에는 형해화된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제가 좀……

○전주혜 위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보충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196조 2항을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조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생각에는 3항과 4항을 두어서 3항에는 ‘검사가 수사 중인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건을 인지하게 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4항으로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하는 이 두 가지 조항을 좀 두어야 지금 검찰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허점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법원행정처 차장님한테……

○소위원장 박주민 예.

○박형수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인지하게 될 때는 경찰관한테 다시 수사를 시켜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그 여죄 범죄에 경찰관이 관여돼 있다라는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러면 또 법안에 보면 경찰관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경찰관이 인지하면 된다고 할 것인데 수사라는 게 그렇게 증거가 항상 명백한 게 아닙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수사를 해 봐야지 진범을 찾을 수 있고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증거도 수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를 해 보니까 경찰관이 여기에 관여돼 있는 의심이 드는데 그 사건을 다시 경찰관한테 수사하라고 돌려보냅니까?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일성, 동일성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3항, 4항 신설을 하자고 한 그걸로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김남국 위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고요. 만약 같은 논리로 하면 검찰에 관련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김남국 위원님,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질문 안 끝났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처 차장님도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만 가정을 해서 제도를 만들면 허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단순히 그런 경우가 실제로 몇 건이나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시다마는 이렇게 여죄 수사나 관련 사건 수사를 못하게 해서 도대체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국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느냐? 이 근본적인 물음부터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답변하지 못하고 이것을 자꾸 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범죄자나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 재산을 가진 자 여기만 득이 되게 하는 그런 법률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경찰관한테 수사를 하도록 해서 하는 게 국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검사는 오면 무슨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왜 검찰에서 직접수사하면 안 되고 꼭 경찰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그것이 경찰이든 검사가든 간에 효율적으로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히려 수사를 못 하게 만드는 제도잖아요. 이것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주민**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검찰청법…… 지금 검찰청에서, 누구라고 하셨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법무부 검찰국장님이십니다.

○**이수진 위원** 국장님, 지금 ‘자신이 수사 개시

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다’에서 다목에 ‘사정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것’, 이것을 좀 빼야 되는 것 아니냐……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다만, 사정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를 넣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이것은 직접수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목 내지…… 가목만 하면 돼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 대담도 안 하고 민주당 위원들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다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양당 위원님들이 합의가 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넣지 말까요?

○**전주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단서를 할 거면 아까 행정처 차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되지 않는 길로 그렇게 단서를 좀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차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는 말이에요…… 김남국 위원님, 저는 소위는 합의의 정신이 있는 데라고 배워왔고 우리가 최대한 합의를 해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목적이 생기면…… 오늘 오후 내내 ‘빨리해 주세요, 빨리해 주세요’, ‘표결합시다’, 그러면 소위를 뭐 하러 엮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를 개최하고 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민주당 위원들 귀에는 별로 합당치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자, 보완수사하는 검사가 여죄를 수사 못 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그래도 된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아야지요.

그래서 논의를 하자는 거고, 제가 처음부터 이 법은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주장을 해 왔

어요. 그것도 귀를 닫고, 그러면 전문가·언론·시민단체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그 앞에 있는 야당 위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이 법은 오로지 그냥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통행할 겁니까? 계속 일방적으로 강행할 거예요? 필요할 때는 강행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합의합니까? 달면 먹고 쓰면 뱉어요? 우리 국회가 이렇게까지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김영배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주셨는데, 충분히 개인적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법사위 소위를 열고 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려고 하는 것은 합의안에 보면 7항에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월 중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 경험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견해가 다르고. 그래서 주장을 여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제가 아까 합의문의 1·2·3 이렇게 읽어 드린 이유도 여기도 보면 6대 범죄 중에 뭘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5항이지요? 5항에 보면 한국형 FBI라고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1년 6개월 안에 다 준비가 되도록,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 구성 13명으로 한다고 까지 되어 있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4월 안으로 다 처리를 한다는 합의를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려들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미 이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향후에도 이게 처리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의 지점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은, 사실 이게 우리가 축조심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대안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가지고 지금 한정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 김영배 위원님, 말씀 정확히 잘 들었어요.

직접수사권을 언제까지 폐지한다,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에 관련된 법안을 6개월 내에 하고 1년 안에 중대범죄청을 신설한다 이게 전부 다 직접수사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발의한 동일성·단일성의 법안은 직접수사권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지휘, 경찰과의 관계에서 지금 처리하는 99% 사건의 송치 사건, 그 사건의 보완수사에 관련된 규정을 여러분이 만들어 넣은 거예요. 합의안 취지와 여러분의 입법이 완전히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합의안은 다 직접수사권에 관련된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들어 온 단일성·동일성은 보완수사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잘못 만들어진 법인데 그걸……

○김영배 위원 왜, 4번에 다 있지요.

○유상범 위원 4번에 뭐가 있어요? 4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저희가 이것은 별건 수사 금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합의해서 형사소송법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문구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고 와요. 이 규정이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라는 규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이 법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박주민 위원장한테 니들이 강행 처리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법은 제대로 만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위원 유상범 위원님, ‘니들’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를 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건 둘이서 한 얘기를 인용한 거니까……

○김남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여기서……

○유상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그 말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박주민 위원장님! 표결할 거예요? 표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소위원장 박주민 저희들이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잠깐만, 이거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아까 형사소송법……

○유상범 위원 표결할 겁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예, 표결할 겁니다.

○전주혜 위원 아까 형사소송법 245조의7,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위원장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45조의7은 고발인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는 박주민 간사님이 늘…… 지난주에 검수완박법을 논의하면서 밤 늦게까지 할 때 그리고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과정, 딱 지켜봤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와서 또 강행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적어도 야당에서 말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법률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럴 때는 적어도 여러분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정해만 지면 돌격대처럼 모든 게 정해져요, 논리적 설득이나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할 거면 어제는 뭐 하러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까? ‘들어와서 빨리빨리 하고 표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 하러 합니까? 국회의원은 뭐 하는 존재예요?

○전주혜 위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제 그만 합시다. 할 만큼 충분히 했고,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언제까지나 늘 똑같이, 벌써 2년째 반복되는 이 상황……

○전주혜 위원 196조 2항은 삭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요. 이것은 범죄를 보고도 눈 감으라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자, 일어납시다.

○전주혜 위원 이것은 합의 조항에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패공화국 만들고, 범죄공화국 만들자는 게 지금 민주당 안입니다.

○김남국 위원 검찰이 수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주혜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송치받아서 수사하다가……

○김남국 위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주혜 위원 송치받아서 수사하다가 범죄를 인지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남국 위원 무슨 마치 범죄를 봐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주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게 여기 써 있어요?

○김남국 위원 아니, 지금 여기 4항에 따라서, 지금 합의 정신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주혜 위원 송치 사건 수사하다가 인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한테 돌려보냅니까?

○유상범 위원 잠깐만, 잠깐만. 검찰국장님 말씀하세요.

○김남국 위원 그만 하고, 들어 보시게요.

○소위원장 박주민 전주혜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이 검찰국장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들어 보시지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지난주부터 해서 한 2주간 국회에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6대 범죄 중에서 4개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합의안에 대해서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쟁점 전부 다 검사인 입장에서 이게 왜, 제안이유를 포함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들어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다가 설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뒤에 송치 사건 보완수사를 단일성·동일성 조항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만큼은 정말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표결할 거예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유상범 위원 자, 일어납시다.

○박형수 위원 진짜 표결합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예, 표결할 겁니다.

○전주혜 위원 합의문을 위반했기 때문에 파기는 민주당이 한 겁니다. 저희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표결을 하더라도 법은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법사위원으로 온 것이 창피합니다, 이 법률 이렇게 가면.

위원장님,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답게 법을 만듭시다.

(일부 위원 퇴장)

○**소위원장 박주민** 198조 규정을 축조심사해야 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칙 1조 및 2조 등에 대해서……

○**김남국 위원** 잠깐, 198조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검찰청법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당해 사건을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그리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런 개념하고 막 혼동돼 가지고, 저희가 이 문안을 넣었을 때에 해석되는 개념하고 또 검찰에서 해석하고 있는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그 개념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위에서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차원에서 한 번 더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나요, 소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주민** 맞습니다. 지금 전체회의 과정이 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야당 위원님을 비롯해서 검찰 또는 법무부·법원행정처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혹시 소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추가로 검토 및 반영도 가능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위가 논의할 수 있는 범위의 제한성 이런 것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위원장님, 그냥 문구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말씀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보면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문구가 여러 가지 조항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형사소송법 298조 1항에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는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형사소송법상 유일한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형사소송법에 있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것으로 대체를 해 주셔야 이 조문을 해석하는 법률가들 입장에서 ‘아, 이게 이 소리구나’ 하고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단일성이라는 개념은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혀 없는 개념이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를 가지고 또 많은 해석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형사소송법 학자들은 단일성을 정태적 개념으로 보고 동일성을 사실은 동태적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합친 걸 동일성이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동일성만 넣어도 사실은 괜찮은 거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처음 수석전문위원실 조정의견처럼 또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개념 정도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나마 정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단일성·동일성을 같이 넣어 버리면 이 개념 자체가 뭔가에 대해서 또 일선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좁혀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문구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위원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한 말씀만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기조부장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대검을 대표해서……

○**소위원장 박주민**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대검을 대표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송치 사건 보완수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송치사건은 어떤 권력자들이나 유력자들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는 서민들을 위한 그런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그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정말 일반 서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킹 범죄라든지 성폭력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호소를 해서 그래서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하다 보면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에 하나의 행위가 사건화되지만 수사하다 보면 수사 과정에 계속 또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죄들이 발생하고요. 성폭력 사건도 한 건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조사하다 보면, 그런 아동 성폭력이나 이런 걸 조사하다 보면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과 피해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검사들은 그런 사건을 밝히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현재까지 수십 년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피해자들을 누구도, 검사들은 절대로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 계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런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 앞에서 여기서 결정하시는 것을 정말 설명하시고 진지하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설득하실 수 있으시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 대표적으로 김예원 변호사님께서 계시는데요 중앙일보에 기고하신 것만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단 한 번이라도 숙고해 주시고 공청회라도 만들어서 충분한 민주주의적인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법사위 소위에서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있어서 크나큰 과오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숙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주영환 위원장님, 법무부 기조실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같은 의견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주영환 저는 다른 어떤……

○소위원장 박주민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주영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죄송합니다. 저희가 국회라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주영환 위원장님, 제가

짧은 시간만 허용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박주민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결 절차로 좀 들어가야 돼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 법률안들과 지금까지 논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 법률안들과 지금까지 논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       |       |       |       |
|-------|-------|-------|-------|
| 김 남 국 | 김 영 배 | 박 주 민 | 박 형 수 |
| 유 상 범 | 이 수 진 | 전 주 혜 | 최 기 상 |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 장 호 |
| 전 문 위 원     | 허 병 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   |   |   |   |
|-----|---|---|---|---|
| 법무부 |   |   |   |   |
| 차   | 관 | 강 | 성 | 국 |
| 기   | 획 | 주 | 영 | 환 |
| 조   | 정 | 구 | 자 | 현 |
| 실   | 장 | 예 | 세 | 민 |
| 검   | 찰 | 진 | 교 | 훈 |
| 국   | 장 |   |   |   |
| 대   | 검 |   |   |   |
| 찰   | 청 |   |   |   |
| 기   | 획 |   |   |   |
| 조   | 정 |   |   |   |
| 부   | 장 |   |   |   |
| 경   | 찰 |   |   |   |
| 청   | 차 |   |   |   |
| 장   |   |   |   |   |

○법원측 참석자

|   |   |   |   |   |   |   |   |   |   |
|---|---|---|---|---|---|---|---|---|---|
| 법 | 원 | 행 | 정 | 처 | 차 | 장 | 김 | 형 | 두 |
|---|---|---|---|---|---|---|---|---|---|